



소규모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

사업주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

건설현장 재해의 74% 이상이 20억 미만 소규모건설현장에서 발생, 그 중 43%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현장에서 발생!

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
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
- ▶ 신규채용자 교육
 - 1시간 이상
 -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면제
- ▶ 정기안전 교육
 - 매분기 6시간 이상, 모든 근로자
- ▶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
 - 지정 등록기관에서 4시간
 - 3억원 미만 영세규모 현장은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용
 -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2014년 6월 1일 이후부터 의무적용



※ 교육 미실시에는 **5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 부과

근로자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 등) 지급 및 착용토록 조치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

- ▶ 사람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 : 안전모
 - ▶ 2m이상 높이에서 떨어질 위험 : 안전대
 - ▶ 물체의 떨어짐, 끼임, 감전 위험 : 안전화
 - ▶ 물체가 날릴 위험 : 보안경
- ※ 보호구 미지급 시 **5년 이하의 징역** 또는 **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

(근로자 미착용 시 **5만원의 과태료** 부과)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

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

- ▶ 안전관리비 : 총공사금액 4,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
 -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
 - 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

▶ 사용항목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| ⑤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|
| ② 안전시설비 | ⑥ 근로자 건강진단비 |
| ③ 개인보호구 구입비 | ⑦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|
| ④ 안전진단비 | |

※ 안전관리비 미계상 시 : **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

산업재해발생보고

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

- ▶ 산업재해 :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
 - 산업재해 발생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

※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 예외

- ▶ 중대재해 : 사망자 2인 이상, 부상(질병)자 동시에 10인 이상, 3개월 요양 부상자 동시에 2인 이상
 - 지체 없이 관할 노동지청에 보고

※ 발생보고 미실시 : **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



- '11. 5. 19 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**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** 되며
- '11. 7. 1 부터 대형현장은 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 미비시 즉시 사법처리 기준이 강화되고, **중·소규모 건설현장도 「추락방지조치 위반」 시에는 즉시 사법처리**가 됩니다.

※ 추락방지 조치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소규모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

근로자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

건설현장 재해의 74% 이상이 20억 미만 소규모건설현장에서 발생, 그 중 43%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현장에서 발생!

안전모,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

- ▶ 근로자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
 - ▶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당당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
 - ▶ 보호구는 각각의 작업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착용
- ※ 근로자 보호구 미착용 적발 시 즉시 **5만원의 과태료** 부과



급박한 위험상황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

- ▶ 위험상황을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
- ▶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실시
- ▶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



사업주가 지시한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

- ▶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참석
- ▶ 각종 안전보건시설의 임의 해체 금지
- ▶ 위험장소 출입금지 및 건설장비 제한속도 준수



건설현장 재해의 74% 이상이 20억 미만 소규모건설현장에서 발생, 그 중 43%가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영세규모현장에서 발생!

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의 끝, 슬래브 끝, 개구부 등에는 안전난간, 덮개 등을 설치

- ▶ 안전난간은 상부 및 중간 난간대, 난간기둥, 발끝막이판으로 구성
- ▶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
- ▶ 난간대는 지름 2.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일 것
- ▶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



추락 위험장소(작업발판, 개구부 제외)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 등 작업발판을 설치

- ▶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,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
- ▶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
- ▶ 작업발판은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
- ▶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



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을 설치

- ▶ 낙하물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
- ▶ 수평면과의 각도는 20° 이상 30° 이하를 유지
- ▶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내밀도록 설치



철골작업 등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작업은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, 주요 이동로에는 승강사다리·가설통로를 설치

- ▶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승강로 설치
- ▶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





실내, 생활건축 작업별

유해 ·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

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!

건축공사 마감작업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◎ 도장, 방수, 도배 및 내장 목공작업 ◎

위험포인트

- ▶ 도장 및 방수작업 시 유기용제 발생에 따른 **화재 · 폭발 위험**
- ▶ 밀폐 공간 도장, 방수작업 중 유해가스에 **질식, 중독 위험**
- ▶ 도배, 내장목공 작업 중 발판불량에 따른 **전도 및 추락위험**

화재폭발위험



안전대책

- ▶ 도장 및 방수작업 중 **화기사용 금지** 및 소화기 배치
- ▶ 환기설비 설치 및 송기마스크 등 **호흡용 보호구 착용**
- ▶ 말비계 등 **튼튼하고** 발판폭(40cm)이 확보된 **안전발판 사용**

환기설비설치



◎ 미장, 조적, 타일 작업 ◎

위험포인트

- ▶ 부적절(미고정, 강도부족)한 작업발판을 밟고 작업 중 **추락위험**
- ▶ 작업발판 단부에서 실족하여 **추락위험**
- ▶ 조명등, 전동믹서, 그라인더 사용 중 **누전에 의한 감전위험**

발판에서 추락위험



안전대책

- ▶ 비계 작업발판, B/T 비계 등 **안전한 작업발판 확보**
- ▶ 작업발판 설치 시 단부에 **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**
- ▶ 조명등, 전동믹서, 그라인더 등에는 **접지선 연결** 및 **누전차단기 연결**

안전시설 설치



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!

건축공사 마감작업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하여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!

◎ 유리 및 창호 설치, 외벽 도장 작업 ◎

위험포인트

- ▶ 운반 및 설치작업 중 유리 등 자재의 **낙하·비래 위험**
- ▶ 고소작업차에서 유리설치, 코킹 작업 중 **추락위험**
- ▶ 달비계 작업 중 로프 풀림 또는 끊어짐에 따른 **추락위험**



안전대책

- ▶ **낙하물 방지망** 설치 및 낙하위험구간 **근로자 출입금지**
- ▶ 고소작업차 발판단부에 **안전난간 설치** 및 **안전대 착용**
- ▶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를 묶고, **수직구명줄을 별도로 설치·체결**



◎ 벽체 등 해체 및 철거작업 ◎

위험포인트

- ▶ 조적 벽체 해체작업 중 벽체일부가 **낙하 또는 도괴 위험**
- ▶ 노후건물 등 내부 마감재 철거작업 중 **건물 붕괴 위험**
- ▶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중 파손으로 **추락위험**



안전대책

- ▶ 해체방법·순서 등이 포함된 **해체작업계획 작성 및 준수**
- ▶ 건축물 **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** 및 붕괴위험 시 사전 안전성 평가
- ▶ 슬레이트 지붕 작업 시 **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** 설치

